

성남 도시관리계획(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5. 06. 02.

성 남 시 장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사항

1)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나)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①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□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(변경)(위례지구 내 성남시 관내만 해당)

기 정
제 I 편제1장제4조 (지침적용의 기본원칙)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평가, 재해영향평가,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,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, 성남시, 하남시 관련조례(이하 해당시·구)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.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해당시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. ③ 지침의 내용은 ‘규제사항’ 과 ‘권장사항(유도사항 포함)’으로 나누어진다. 이중 ‘규제사항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, ‘권장사항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장려하는 사항을 말한다.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‘예시도’는 그 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예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. ⑤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되, 별도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을 적용한다. ⑥ 대지상호간 분할·합병 또는 공동건축의 해제·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⑦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은 관련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 단,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정책사업(지방자치단체 포함)을 위한 가설건축물 등은 예외로 한다. ⑧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·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·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. ⑨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(건축계획 등 포함)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변 경
제 I 편제1장제4조 (지침적용의 기본원칙) ① ~ ⑥ (생략) ⑦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은 관련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 단,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정책사업(지방자치단체 포함)을 위한 가설건축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예외로 한다.(개정) ⑧ ~ ⑨ (생략)
변경사유
·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반영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자 함.

나. 도면은 게재 생략